

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
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(정재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정재환, 문기호, 문희성
안영호, 박경흠

1. 제정이유

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·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(안 제3조~제4조)
- 다.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 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복지시설 지도·감독 (안 제6조)
- 마. 장애인학대 현황조사(안 제7조)
- 바. 교육 및 홍보,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제9조)
- 사.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8. 14. ~ 8. 20.(6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

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학대”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3. “피해장애인”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.
4. “장애인복지시설”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1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, 상담,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, 의료기관,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제5조(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)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·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1.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

3.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
4.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5.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보호·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6조(장애인복지시설 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 제2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·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제7조(장애인학대 현황조사) ①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장애인학대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현황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및 기관 종사자,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·지원 사업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)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,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준수의 의무)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·누설해서는 안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